의안번호	제 452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2 월 일 (제 285 회)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 정 촉 구 건 의 안

발 의 자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의원 외 7인
발의연월일	2009년 12월 4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제 452 호

발의연월일 : 2009. 12. 4
발 의 자 : 이언구 의원외 7인

1. 주 문

○ 전투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것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청주, 충주전투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육체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

나. 전투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보상방안 마련

다.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라. 법률제정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주민생존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건의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김학송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전쟁과 분단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룩한 발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그 기적의 뒷면에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 이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오직 국익이 최우선이라 믿으며 청주·충주전투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냈습니다.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언제 사고가 날 지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을 참으며 수 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투비행장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뿐이며
주민들의 작은 요구마저도 귀기울여주지 않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정

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하여 보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미 軍 소음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외면 하기에 그 명분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현재 소음 노출의 범위와 수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 재산상의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 국방부와 당시 건설교통부가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결국 예산상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면 입법하겠노라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는 묵묵부답인 실정입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투비행장 이전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언제나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님!
김학송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다행인 것은 주민들의 오랜 소원처럼 국방부 입법 예고안을 비롯하여, 軍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관련 의원 발의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어떤 법률안이 되었건 간에 피해 대책의 소음기준이 피해 현실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방지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소음피해 보상 재판도 정부와 국회에서 하루빨리 종결되어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등의 군 소음 특성을 고려해볼 때 최소한 민간항공기 소음 대책 이상의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주민들의 눈물이 멈추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군소음방지법이 제정된 가까운 일본의 경우처럼 75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 보상을 포함하여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軍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법

안 마련을 통해 국회(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국가안보와 주민생존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거듭하여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9년 12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